

한양 더 챔버 파크로지아 오피스텔 분양광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5년 2월 21일 사용승인을 완료 하였으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니 본 분양 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6.05.14)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3.30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경기도 하남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3.30 광고일과 다름) 현재 경기도 하남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하남시 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발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시	26.05.19.(화)09:00~17:30	26.05.22.(금) 16:00 이후	26.05.23.(토),24.(일) 10:00~18: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56) 1층 105호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청 [2022-건축과-분양신고- 3호(2022.03.30.)]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허가번호 : 2021 - 건축과 - 신축허가 - 247]
- 분양사업자 및 시행수탁사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시행위탁사 : (주)에스파워, 시공사 : (주)한양건설, 분양대행사 : (주)와이제이산업개발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56
- 대지면적 : 2,884.00㎡, 건축물 연면적 : 32,207.72㎡ (지상층, 지하층 포함)
- 주차대수 : 247대(자주식 247대)
- 공급규모 : 지하6층, 지상10층 1개동 업무시설(오피스텔) 99실중 6세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감일지구)
- 본 분양목적물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인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밖의 지역이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 내진설계 등급 : 건축법 제 48조 3항 내진성능 확보한 시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 내진성능 관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점메르켈리 진도 등급 (MMI 등급) VII 0.204g
- 입주예정일 : 2026년 06월 예정 (본 오피스텔은 2025년 02월 21일 사용승인 완료하여 분양대금 완납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B6	주차장 / 기계전기실
B5	주차장
B4	주차장
B3	주차장
B2	부대시설 / 주차장
B1	근린생활시설
1F	주출입구 / 근린생활시설
2F	근린생활시설
3~10F	오피스텔 / 오피스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타입별 모집의 경우)

(단위 : 호실 , 층 , m²)

타 입	공급호실(수)	층	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B1	1	3	46.29	27.49	73.78	40.18	113.96	9.69
B1A	1	3	46.29	27.49	73.78	40.18	113.96	9.69
B1a	1	6	46.29	27.49	73.78	40.18	113.96	9.69
B2A	1	4	43.79	26.00	69.79	38.01	107.80	9.16
B2a	1	4	43.79	26.00	69.79	38.01	107.80	9.16
B3	1	5	46.29	27.49	73.78	40.18	113.96	9.69

■ 공통사항

- 다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실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 및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금액은 타입,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타입별로 상이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시행위탁자가 신고할 예정으로 분양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시행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가에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은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며, 실별 설계도서는 분양홍보관 내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실, 방재센터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실, 방재센터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건물의 대지는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오피스텔, 오피스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에 대해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의 회차별, 중도금 납부액 및 납부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은 상기 기재된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지정 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실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공용면적은 용도별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층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을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실별 주차장 면적은 전체 주차장 면적을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의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대지공급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별(오피스텔 및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분양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분양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분양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잔금 납부시 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설계변경에 의한 건물 면적(공급면적 및 지하주차장 면적)증감은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및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중도금은 시행위탁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법인계약, 다호실 계약 등)등에 따라 대출 조건과 취급 등이 제한[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마지막 회차의 중도금(5회차)은 시행위탁자와 대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수분양자께서 직접 납부 하여야 하니, 납입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 납입 시 연체이자 발생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 물건 계약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 시에,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 시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합니다.(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기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 입	라인	공급 호실	층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9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	-	-	-	-	-	-	입주시
B1	8	308	3	375,210,000	278,900,000	27,890,000	682,000,000	68,200,000	-	-	-	-	-	-	613,800,000
B1A	5	305	3	375,210,000	278,900,000	27,890,000	682,000,000	68,200,000	-	-	-	-	-	-	613,800,000
B1a	5	605	6	391,680,000	291,200,000	29,120,000	712,000,000	71,200,000	-	-	-	-	-	-	640,800,000
B2A	5	405	4	366,360,000	272,400,000	27,240,000	666,000,000	66,600,000	-	-	-	-	-	-	599,400,000
B2a	9	409	4	366,360,000	272,400,000	27,240,000	666,000,000	66,600,000	-	-	-	-	-	-	599,400,000
B3	8	508	5	381,820,000	283,800,000	28,380,000	694,000,000	69,400,000	-	-	-	-	-	-	624,600,000

2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나, 준공후 분양으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모집광고일(2026.05.1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유형별(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6.05.19.(화) 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26.05.22.(금) 16:00 이후	26.05.23.(토),24.(일) 10:00~18: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은행창구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56) 1층 105호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입금계좌

구 분	청약신청금	내 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분	구비사항		
일반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 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홍보관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05.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 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6.05.22.(금)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900% 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사업주체가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6년 05월 23일(토) ~ 2026년 05월 24일(일)	10:00~18:00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56) 1층 105호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에게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KB국민은행	349401-04-31743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A-10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감도장 또는 서명(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오피스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용도 :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계약시 (배우자 포함 본인 외 전부)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 등)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분양홍보관 내 비치)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오피스 계약용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 (2026.05.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KB국민은행	349401-04-317433	케이비부동산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A-1001홍길동)

※ 위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위의 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홍보관에 제출합니다.(현금수납불가).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는 해당 호수를 타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청약신청 계좌 무통장 입금(분양홍보관 內 현장 수납을 받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번호는 지정된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시 유의 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임의분양 합니다.
- 청약신청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점자가 계약체결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및 계약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임의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공사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해당 법률을 준수합니다.

4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제2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예정일 2025년 02월 / 입주 예정일 2025년 04월(준공/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통보예정)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 및 사용승인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항은 본 입주(입점)자모집광고의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에스파워,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분양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시행위탁사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와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계약자에게 본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수탁자로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모든 권리의무는 주식회사 에스파워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매도인으로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계약자에 대한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식회사 에스파워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소송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분양목적물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점지연 지체상금 등은 (주)한양건설이 책임지기로 하며, 계약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하자보수(손해배상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 명칭 포함) 교체 시 계약자는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본 사업의 공사비, 사업비, P.F 대출 원리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발행 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한다. 또한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회사 에스파워의 책임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단, 이를 해태 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 주식회사 에스파워의 책임으로 납부하기로 합니다.(단, 계약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임대수익률, 투자수익률 등 각종 보장사항 및 혜택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와 전혀 무관함을 확인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당사자로서 서면으로 약정한 것이 아닌 각종 임대수익률, 투자수익률 등 명칭 불문의 수익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본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 종료,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소송 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건축, 토목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719,400,000
전기, 소방, 통신, 기계	(주)에스비이엔씨	468,6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사명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주식회사 에스파워	(주)한양건설	주식회사 와이제이산업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3길 12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감북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2,118호 (창곡동 드림시티)
등록번호	110111-1348237	260-88-00482	408-81-09859	729-81-00599

■ 분양사업자와 분양대금의 관리자의 관계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7호]-본 사업은 분양사업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분양사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56 1층 105호**

■ 분양문의 : 1899-8264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공통유의사항

- 본 분양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호수에 대한 호수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호수당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본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및 대지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정산 처리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은 오피스텔 및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 (교통영향평가)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전체주차장 면적을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후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의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입점)시 또는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수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환급 및 사업자등록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환경권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여건에 따라 유리창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오피스텔, 오피스 계약자는 오피스텔, 오피스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반자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 및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한 관련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법상 필요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가 있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분양 시 업종지정호실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업종지정호실을 제외하고 전체 타호실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분양 관련 유의사항**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설계변경 사전동의서에 의거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인테리어, 통신시설 가입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분양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사업주체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분양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단, 분양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수는 공사 시공 중에 샘플호수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전기·통신 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각종 기구(조명/배선기구/전기·통신함 등)의 설치위치 및 재질, 사양이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광고 및 광고물 관련 유의사항**
- 각종 광고 홍보물(분양홍보관, 리플렛, 전단, 분양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지하철역, 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지하철역 신설, 도시철도 노선 등)은 교통여건 등의 계획 및 예정사항은 향후 관계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분양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관에 표시, 설치된 시설의 색상 및 크기, 형태, 작동방법은 실 착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각종 사인물, 가구, 가전제품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디스플레이(전시용품)용으로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이동식 가구 및 페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CG(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부대시설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자료의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므로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

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공급안내문, 인쇄물(카달로그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입면계획, 색채 등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더 챔버 파크로지아),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내 건립타입, 주민공동시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시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의 명칭 및 호수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관계 규정에 의거 회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설계 유의 사항1.일반사항

- 본 건축물은 2021년 11월 11일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건축허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분양면적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m²)*0.3025 또는 형별면적 (m²) /3.3058)

- 본 건물은 오피스텔,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매각시설로서 매각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 계획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제 및 부속물(도어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발주처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인허가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이동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관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자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인근에 일반도로가 접하여 입주 후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공개공지와 보, 차도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으며, 단지 내 설치된 보도의 경우 유지관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 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일조권, 조망권, 동간 간섭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성) 과정 및 실 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출입구 도로 확폭구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 디자인, 외부조명 시설, 사인물,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

타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건물의 특성상 이삿짐의 이동시 지하 2층을 통해 각 시설의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며, 사전에 확인·수인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환풍, 빗물 저류조 등이 위치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음식점 및 조리를 위한 주방시설을 포함한 점포가 입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내 입점자가 냄새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만,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하여 인근 호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된 제연설비인 제연덕트 급·배기구 설치로 상·하 호실간 생활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인 조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약자 동의가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공존하는 건물로써 지하주차장 및 방재센터, 창고 등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 비상시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복도 끝에 승강식 피난구를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2. 단지배치/조경
- 단지 내 공공 장소인 공개공지, 휴게공간, 쉼터 및 보행로 등의 설치로 인접 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지 인근 고층건물, 주변 단지의 신축 등에 의해 각 세대별 층수와 향에 따라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휴게공간, 부대시설, D/A,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로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분양홍보관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 여건 및 현장 여건 관계기관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조경 수목 포함)에 대하여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로비, 주차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차 충전설비, 공용 조명기구 & 통신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주동과 저층부의 외관 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 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사인물, 경관조명, 동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디테일, 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오수는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수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관계법령에 의해 단지 외부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 되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단지와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경사도 및 단지 내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도로에 면한 조경 패턴 및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은 본 시공 시 인허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로고의 위치, 크기 및 동 표시 등은 광고물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일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건축한계선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내에 각종 시설물을 임의 설치시 법에 저촉되어 철거될 수 있습니다.3. 지하주차장
- 단지 진 · 출입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및 연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사업부지 북동측에 1개소가 위치하며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는 실시공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시설 설치 완료 후의 위치변경이나 지정은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사용 구분 및 구획은 추후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방지를 위해 송풍기 가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배관 및 덕트 등의 설치공간 및 루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는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 높이는 지하 2층은 3.4m, 지하3층 ~ 지하6층은 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진 출입램프 상부 세대는 차량통행 및 출차표시등에 의한 소음과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확장형 주차비율 및 경형 주차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최대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세대 면적에 따라 균등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 2층에 재활용(쓰레기)집적소가 설치되며 조업을 위한 차량 이동 및 주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악취,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개별점포 전용공간의 천정,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이 없으며, 전등을 포함한 일체의 인테리어 공사는 입점자 공사분으로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호실)별 개별적인 공사시 소방 관련 법 등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점포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사항(영업허가, 용도변경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별 용도를 위한 입점시에는 해당 소방법규 등 관련 법규에 맞춰 별도 연기배출시설, 덕트공사 등을 입점자 또는 계약자의 공사분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출입구 및 바닥 등에 레벨차가 있으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5. 오피스텔.오피스 주 동
- 피난계단에는 창호 자동 개폐기가 설치될 수 있고, 피난계단 방화문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불량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시 개방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동의 색채 및 옥외 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세대는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및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시설물(자동문,우편함) 등은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심의기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의 입면, 조경 등은 특화 및 경관심의 등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AD, PIT 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공개공지는 입주자 뿐 아니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각종 옥상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설치위치 지정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냄새 등이 인접세대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 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경량벽체로 설치된 실내 벽체는 일반 벽식구조에 비해 소음전달이 클 수 있으며,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등 인근세대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복구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옥상, 필로티, 욕실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세대 내 · 외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음식점 및 조리를 위한 주방시설을 포함한 점포가 입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탈취시설이 설치되지만, 완벽하게 차단되지 못하여 인근 세대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 전 실의 도어방향은 피난방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오니, 계약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 자재(타일, 시트, 강마루, 인조강화석, 인조대리석 등)의 경우 본공사시 자재의 특성상 패턴 및 색상이 분양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 외부창호는 향후 사용성 향상, 미관개선 등을 고려하여 유리두께 및 창호사이즈, 프레임두께, 설치위치, 개폐방향, 디자인 등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 실 내부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경량벽체에는 액자, 선반 등 하중을 견디는 고정 가구 및 기계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모형,VR,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 할 경우 분양홍보관을 우선으로 함)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홍보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창호(프레임, 유리등)는 분양홍보관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법에 따라 본공사 시 동급이상의 자재로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세대내 가구, 가전 및 도기의 모양, 재질,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설치여부는 계약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사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및 공용부의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조명,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또는 매립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및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세대별 침실 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배연설비는 화재시 배연을 위한 설비로 배연설비가 설치된 창호는 평상시 개폐가 불가능하며, 임의 해체, 차단등을 금합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전제품의 업체 및 브랜드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난방은 지역난방 시스템 적용으로 바닥난방이 적용됩니다.
- 오피스텔의 냉방은 지역냉방 시스템이 적용되며, 1방향 팬코일 유니트(Fan Coil Unit)가 천정에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의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온수분배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의 냉·난방은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되며, 팬코일 유니트 시스템(Fan Coil Unit System)방식으로 천장 카세트형 팬코일 유니트(Fan Coil Unit)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비데 일체형 양변기가 설치되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업체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오피스텔,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의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 천정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미관이 미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전열교환기의 사양, 제조 및 설치업체는 변경될 수있으며, 설치위치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의 실내환기는 기계 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중 수전, 드레인, 선풍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기계실,전기실, 발전기실,헬룸 등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부 세대의 발코니에는 상부 세대들의 배수 입상관이 하나 이상 더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의 연출용 조명기구(스포트라이트)와 전시용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 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일부 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장치 및 무인택배 보관함의 위치는 각 코어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의 설치위치는 실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에는 위성안테나, 피리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안면방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층에는 승강기 기계실, 냉각탑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세대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 시 소음,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주요 개소에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권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도서와 실제 공사간에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의 구조 및 성능 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변경 및 면적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입점)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내 명칭 및 실번호 표기방법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표기방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설계상 주요 고지사항의 설계 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관련 특약 사항※ 본 사항은 본 입주(입점)자모집광고의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사 주식회사 에스파워,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분양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시행위탁사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와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계약자에게 본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 수탁자로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모든 권리의무는 주식회사 에스파워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매도인으로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계약자에 대한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식회사 에스파워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소송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분양목적물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점지연 지체상금 등은 (주)한양건설이 책임지기로 하며, 계약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을 상대로 하자보수(손해배상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 명칭 포함) 교체 시 계약자는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대금은 본 사업의 공사비, 사업비, P.F 대출 원리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게 발행 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한다. 또한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식회사 에스파워의 책임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단, 이를 해태 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 주식회사 에스파워의 책임으로 납부하기로 합니다.(단, 계약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주식회사 에스파워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계약자는 임대수익률, 투자수익률 등 각종 보장사항 및 혜택에 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와 전혀 무관함을 확인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당사자로서 서면으로 약정한 것이 아닌 각종 임대수익률, 투자수익률 등 명칭 불문의 수익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본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 종료, 매매대금 감액,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익(소송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3호, 2021. 1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 p.22. 대지의 지번(地番) ----- p.23. 건축물 연면적 ----- p.24. 분양가격(면적별·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 p.2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 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p.2나.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p.2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p.2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p.2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p.5의4.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나.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6. 분양사업자(신탁계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와 위탁자를 말한다)·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 p.30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p.30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p.30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없음)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p.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 p.24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모집방법(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다) 및 선정 일시 --- p.19~20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없음)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p.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없음) 15.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당없음)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⑤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11.]

※ 본 분양광고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 합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은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